

#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 및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 을  
중심으로

장 박 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및 동 일본연구소 초빙연구원

본고는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교섭 중 그 핵심이었던 제2조와 제3조의 과정분석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분석만이 밝혀낼 수 있는 논점들을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태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동 조항의 분석은 결과로서 나타난 조문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비(非)과정분석'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들 분석은 그 조항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여시킨 결과 동 2조3조를 단지 양국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논리적 결과로 보려고 하는 시각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의 공식문서에 의거하면서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여태까지의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논점들을 밝힌다. 그 논점들은 첫 째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동 조항의 결과는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 등 개별적인 정권의 속성에 기인한 것인가? 세 째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의 결과는 단지 한국정부의 타협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째 제2조와 제3조는 교섭과정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네 가지 물음이다.

본고는 과정분석을 통해서 첫째 과제에 대해 제2조는 과거를 청산하는 원칙을 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둘째 과제에 대해 동 조항으로 인해 구조약의 무효시점이 매매해진 것은 한일 회담 당초부터의 일이었음을, 또 셋째 과제에 대해 동 3조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중요한 결과 얻어낸 결과였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과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동 3조의 내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동 2조를 희생시켰음을, 즉 동 2조와 3조는 흥정대상이었음을 밝힌다.

주제어: 한일회담, 기본관계조약,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 과정 분석

## I. 문제 제기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과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장래 관계를 여하히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sup>1</sup>(대한민국정부, 1965: 1)라고 한국정부가 해설한 기본관계조약은 한일회담의 성격을 규정한 바로 헌법적인 성격을 지닌 조약이었다. 그 속에서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는 본문 제2조(이하 구 조약 무효조항)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i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제3조(이하 유일합법성 조항)는 바로 식민지 지배관계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한국정부의 합법성에 관한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기본관계조약 중의 핵심적인 조항이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연구 중에서도 특히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서 아직 미흡한 점을 많이 남기고 있다.

여태까지의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분석은 결과로서 나타난 제2조와 제3조의 조문에 먼저 의거해서 그 조문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그 조문이 결과로서 성립한 논리를 추측하는 스타일을 주로 취해 왔다. 즉 제2조에 관해서는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 측과 독립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과의 절충으로서, 또 제3조에 관해서는 유엔결의안과 상관없이 유일합

1. 본고에서는 이하 인용에 관해서는 한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도 모두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한다.

법성을 주장하는 한국 측과 그 결의안 내에서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싶은 일본 측과의 절충으로 보는 시각이 그 대표들이다. 말하자면 이들 접근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서부터 조문의 결과를 설명하는 비(非)과정 분석이며 따라서 교섭의 경위, 내용, 변화, 그리고 상호관계 등, 교섭과정의 분석이 요구될 논점들에 관해서는 일절 논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주된 연구들에서는 제1차 한일회담이나 제7차 한일회담 시의 과정분석이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연구 역시 아직 한일회담의 공식문서가 정식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조건도 작용하여 그 과정분석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저자는 앞선 연구에서 기본관계조약의 전체 과정을 과저청산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나(張博珍, 2007) 과정분석이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태로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관계조약 중 특히 제2조와 제3조를 중심으로 그 조항의 과정분석만이 보여주는 논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 작업은 기본관계조약이 지닌 헌법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일회담의 전체적인 성격을 보다 천명하는 데 중요한 작업으로 될 것이다.

## II. 선행연구들이 남긴 과제들

기본관계조약에 관해서는 다른 협정들과 같이 그 타결 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1965년 6월의 한일협정 타결을 맞이하여 『思想界』가 각 협정들의 조문 분석을 도모한 7월의 특집에서 기본관계조약을 맡은 양호민은 제2조의 ‘이미’라는 어구에 일찍 주목하여 “과거의 군국주의통치를 합법화 합리화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준 것이 이 「이미」라는 말이다”(梁好民, 1965: 50)라고 규정, 그 후의 동 조항에 대한 주된 비판의 효시가 되었다.

또 제3조에 관해서도 양호민은 “이 조항에는 대한민국정부의 영토 관할권이 법적으로 북한에까지 미치는지 아닌지, 또는 국련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공산집단을 합법적(de jure) 정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de facto) 정부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지는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梁好民, 1965: 51)고 지적하여 이 조항에 관해서도 그 후 오래 계속된 비판의 기초를 닦았다.

이런 흐름은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예컨대 민족문제연구소가 한일협정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협정의 재검토를 시도한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에서 한상범은 동 2조에 관해 ‘이미(already)’의 삽입은 한국 측 요청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동 결과를 “박정희 세력의 인식 속에는 일제의 한국 강점·지배가 조금도 불법이라는 생각이 없었다”(한상범, 1995: 152)고 말하여 동 조항의 결과를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과 일본 우파세력들의 합작으로 보고 있다.

또 제3조에 관해서는 유엔결의를 인용하여 동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as specified in)’라는 어구를 삽입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합법성에 관해 “제한적 취지를 분명하게 표시한 어구”라고 평가, 이에 따라 “북한 지역의 정부는 남한 지역의 정부와 별도로 인정된다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한상범, 1995: 156)는 평가를 내렸다.<sup>2</sup>

그와 같은 문맥에서 한일협정은 “한일의 두 부도덕한 두 세력”(이장희, 1996: 4)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조문 수정을 요구하는 이장희는 제2조에 관해서는 ‘이미’라는 애매한 어구 삽입에 따라 양국에서 구조약의 무효시기에 관해 해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3조에 관해 ‘유엔결의 195(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라는 어구 삽입에 따라 양국에서 한국의 합법성에 관한 해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이장희, 1996: 6-7).

이와 같이 한일협정 타결 시부터 나온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에 관한 비과정분석들은 단지 결과로서 나타난 조문 중 특히 ‘이미’나 ‘유엔결의

2. 다만 양호민과 달리 한상범은 1990년의 ‘남북합의서’ 교환이나 1991년 남북유엔 동시 가맹 등을 맞아 제3조에 의해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이 애매해졌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 당시의 비판적 문맥과 달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는 어구에만 주목한 것뿐이지, 그 조문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왜 제기되며,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등의 조약 형성과정의 고찰을 일절 결여시키고 있다. 그 귀결로서 그들 비교정분석은 최종문안의 표현의 문제점만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는 그 원인을 미리 정해진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경향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조문 결과와 정권의 성격을 성급히 연결시키는 견해는 바로 이 비교정분석이 낳은 방법론적인 한계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중엽 이후 나타난 주된 연구들 가운데는 그 당시 열람 가능한 공식문서 등을 도입, 한일회담의 과정분석을 진행한 업적들이 있다. 예컨대 이원덕(1996), 高崎(1996), 太田(2003), 吉澤(2005) 등의 선구적인 연구들은 제1차 한일회담에서의 조문 교섭 등을 분석하여 ‘기본’조약이라는 명칭의 유래나 구조약 무효조항의 요구가 일찍 나와 있었다는 점들을 밝히는 등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 이들 연구 중 특히 이원덕(1996) 및 吉澤(2005)는 제7차 한일회담에서의 조문 교섭의 내용을 일부 발굴하는 등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아직 문서가 전면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진 탓에 기본관계조약의 형성과정 분석에 관해서는 몇 가지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이원덕(1996: 267)은 제2조나 제3조의 최종안이 한국 측 이동원 장관의 제안이었다는 오해를 낳았으며 또 그에 관해서는 일본 측 주장임을 올바르게 지적한 吉澤(2005) 역시 막판교섭에서의 제2조와 제3조의 교환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위의 선구적인 과정분석들도 포괄적인 과정분석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하의 논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공개된 한일회담의 공식문서에 파고들어 제2조와 제3조를 중심으로 기본관계조약의 형성과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이 남긴 몇 가지 과제들 가운데 특히 과정분석이 요구될 이하의 논점들을 심도 있게 밝히고자 한다.

가) 일본에 대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기 위한 핵

심이라고 생각돼 온 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과정분석을 통해서 고찰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의미는 교섭과정에서 변화되었는가?

- 나) 무효시점을 애매하게 한 동 2조는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가? 그것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해 온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 등 개별 정권의 속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 다) 제3조는 한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애매모호하게 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점에 대해 교섭 과정은 한국정부의 동 조항에 대한 대일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그 조문의 경위는 어떤 것이었으며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가?
- 라) 여태까지 그 내용의 분석에 관해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분석돼 온 제2조와 제3조는 교섭과정에서 진정 독립된 존재였는가? 그 관계는 한일회담의 성격에 관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 III. 조약의 형성과정 분석

#### 1. 기본관계 교섭의 대두와 소멸 과정

##### (1) 기본관계 교섭의 대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래 기본관계조약은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처럼 한일교섭의 원칙을 정하는 의의를 지닌 존재였다. 실제 한국 측은 기본관계 조약 막판 교섭의 무대이던 제7차 한일회담에서 이 의의를 “관념상으로는 본 조약(=기본관계조약) 이 앞서고 각 현안에 관한 합의가 이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기본조약은 말하자면 헌법적 성질을 띠게 될 것”(『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22)이라고 규정했다.<sup>3</sup>

3. 인용 중의 (=)를 단 보충설명은 인용자가 했다. 또 한일회담 공식문서에는 편집의 관계로 보이는 2, 3개 정도의 쪽수 표기가 있을 경우가 많으나 본고에서는 이

그러나 기본관계조약의 교섭과정은 위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었을까?

당초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된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한국 측은 그 의제를 확대하여 앞으로 한일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51년 11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재산청구권, 어업, 통상항해, 그리고 ad hoc matter의 순서로 되어 있었으며(『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회의회의록, 제1차~10차, 1951』: 188) 기본관계에 관한 의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한국 측은 한일회담의 성격과 구조를 정할 기초적인 장에서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정하는 바로 ‘헌법’ 문제를 먼저 토의할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제 자체의 채택조차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동 예비회담에서 그 후 그나마 기본관계조약의 기초가 된 외교재개 문제를 제안한 것은 오히려 일본 측이었다(『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회의회의록, 제1차~10차, 1951』: 181).

1951년 2월 정식으로 시작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는 16일의 제2차 본회의에서 양국합의로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간의 기본관계수립’,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어업협정’, ‘해저전선 분할 교섭 결정’, ‘통상항해’, ‘기타’의 여섯 가지 의제가 채택되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1113).<sup>4</sup>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측은 이들 의제의 논의 순서를 이하와 같이 제안했다는 점이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1113-1).

- 1) 양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
- 2) 어업협정 체결
- 3) 해저전선 분할 교섭 결정
- 4) 통상항해 조약 체결
- 5) 외교관계를 포함한 한일간의 기본관계수립

---

들 가운데 저자가 임의로 하나만 골라 표기하도록 한다.

4. 공식문서에서는 동 쪽수 표기는 누락되고 ‘570’이라는 숫자가 표기돼 있으나 이는 전후의 쪽수와 맞지 않으므로 저자의 판단으로 ‘1113’으로 표기했다.

즉 한국 측은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토의를 다른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결 후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 측은 기본관계 수립에 관한 토의를 위한 구체적인 분과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부정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1114). 소위 ‘선 해결, 후 국교’라고 형용되는 한일회담에서의 한국 측 이런 협상전략에 대해 교섭 책임자의 한 사람이던 유진오는 “받을 것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즉 대등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양국간의 부당하고 불행한 잔재를 그대로 둔 채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해봤자 정상화된 뒤에도 항상 분규가 거듭될 것이 아니냐”(俞鎭午, 1961: 6)고 회상했다. 그러나 기본관계 문제는 원래 그 받을 것이 무엇인가, 왜 받을 수가 있는가, 또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등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정하는 문제였다. 그러면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교섭전략은 단지 한국 측 미숙함을 뜻할 따름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측 내부에서는 대일 평화조약 참가를 기대하던 1950년 무렵 한일합방조약 원천 무효에 기초한 교섭진행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주일대표부는 1950년 10월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sup>5</sup>를 작성, 본국정부에 대해서 강제로 인한 조약체결의 무효론에 의거한 한일합방조약 원천 무효에 따른 협상내용을 연구,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합방조약 무효에 기초한 협상이 구체화된 일은 없었다. 왜 인가?

이 논리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측은 당초 대일평화조약 서명국 참여를 통한 대일 전승국으로서 한일 간의 과거를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일 전승국이라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대일 교섭을 진행한다는 일견 ‘적극적’인 전략은 동시에 그 당시 한국이 놓이고 있었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1910년에 시작된 한일 간의 과거문제의 처리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제2차 대전의 처리문제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2차 대전의 처리문제

5. 동 문서는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으로서 편집돼 있다.



로서 한일 간의 과거처리를 도모하려 했다는 것은 한일 두 나라 간에서는 과거를 처리할 기회를 따로 가질 수 있는 전망도 그 근거도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일평화조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은 과거 일본의 한국지배를 승인한 나라였다. 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은 대일 중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조약이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한국이 합방조약 원천 무효에 기초한 교섭을 기대할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張博珍, 2007: 제5장). 사실 결국 한국은 평화조약 서명국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또 그 제2조(a)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국독립 승인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합방조약의 합법성 해석이 강화되었다.

한국 측이 ‘선 해결, 후 국교’라는 전략을 취한 것은 이런 전제 하에서 먼저 국교를 정상화해서 그 후 ‘받을 것’을 요구해도 합방조약의 무효라는 조건도 대일전승국이라는 지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교섭상 ‘받을 것’이 적어짐을 예상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또 이것은 역으로 한국의 이익이 손해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측 태도가 입증하고 있다. 일본 측은 당초 사실상 ‘선 국교, 후 해결’의 입장을 취하며<sup>6</sup> 이를 위하여 제1차 한일회담 개시의 다음 날인 1952년 2월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일찌감치 기본관계조약에 해당하는 ‘우호조약 초안’을 제출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1122~1126). 일본 측이 이런 조급한 국교정상화 정책을 취한 것은 예상될 한국 측 보상요구를 담보로 우선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켜, 그로 인해 평화선 선포에 따른 어업분쟁이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해결 등 당시 일본 측이 안고 있었던 현안들에 유리한 외교관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동 국교정상화 문제가 ‘기본관계’로 된 것은 이런 ‘우호’라는 일본 측 명칭 제안과 제2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평화에 관한 조약’의 절충안이었다.<sup>7</sup> 그런 가운데 본고가 주목해야 할 것은 3월 5일 열린 제4

6. 일본 측 외무성은 당초 기본관계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여 다른 문제의 타결이 늦어질 경우도 이 조약은 일찍 성립시켜 한국과의 국교를 열 입장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外務省, 1953: 19).

차 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기본관계조약초안”(Draft Basic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속에서 정식으로 등장한 구조약 무효조항의 의미다.

최종의 정식 조약에서는 제2조가 된 동 구조약 무효조항 문제는 위 초안에서는 제3조로서 규정되었으나 그 조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null and void)을 확인한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2~4. 2』: 597)고 되어 있었다. 조약의 설립여부에 관해 원천 무효를 의미하는 이 “null and void”의 요구가 일본의 지배과정에서 맺어진 구조약들의 원천 무효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 요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초부터의 원천 무효를 뜻하는 “null and void” 표현의 규정을 요구한 한국 측은 정식한 조약문으로서 구조약들이 왜 원천 무효인가를 나타내는 어구의 규정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다.<sup>8</sup> 즉 상술한 주일대표부의 건의처럼 강제로 인한 조약체결의 무효에 입각한 합방조약 무효라는 입장을 조약문으로서 명시하려는 요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의미는 다음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의 토의 내용이 입증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제4차 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초안을 둘러싸고 중요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일본 측은 동 3조 구조약 무효조항 삭제요구의 이유의 하나로서 정확하게 무효(null and void)가 된 시점을 기술하지 않은 애매한 조항은 다른 해석을 허용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는 논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오히려 동 조항에서 무효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7. 김용식의 회고에 의하면 ‘기본’이라는 말은 김용식 본인의 착상이었다고 한다(김용식, 1993: 120).

8. 한국 측의 회담 요약기록에는 한국 측이 “합방조약이 일본의 침략적인 불법행위임으로 시초부터의 무효”를 주장했다는 기술이 있다(外務部 政務局, 1960: 52).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조약문으로 그것을 집어넣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단지 “null and void”의 확인만을 규정한 것은 해석의 실행으로부터 생길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했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2~4. 2』: 605).

이 주장이 가지는 의미는 증대할 것이다. 즉 한국 측은 “null and void”의 규정을 통해서 합방조약의 체결 당시부터의 무효를 일본 측과 확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날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already”의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합방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당초부터 남기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상술한 비과정분석들이 주장해왔듯이 박정희 정권 하의 “already” 삽입으로 인해 무효시점이 애매해졌다는 비판은 정확성을 잃는다. 무효시점의 애매함은 ‘반일’적인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즉 대일교섭에 있어서 연합국 참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 의도가 좌절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대일평화조약 제2조(a)가 단지 한국의 독립승인만을 규정한 조건 하에서는 일본이 자신에 불리한 합방조약 원천 무효라는 해석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선 해결 후 국교’라는 교섭 자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원래 한일교섭의 헌법적인 의미를 지닌 기본조약에서 합방조약 원천 무효, 즉 한국지배의 불법성을 전제 조건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한국 측이 굳이 기본관계조약보다 다른 구체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이유도 그 교섭 상의 합리성도 없었을 터이다. 따라서 한국 측이 ‘선 해결’을 도모해야만 했던 이유는 당초부터 한국 측이 일본 측과의 대립으로 인해 구조약 무효시점을 애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구조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측이 양국 간에서는 사실상 무효 시점을 애매하게 하면서도 굳이 구조약 무효조항의 삽입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당시 외무부에서 교섭을 지시하는 입장에 있던 김동조(1986: 41)는 “우리가 한일 합방조약의 무효 확인을 기본관계조약에 굳이 명문화하려는 것은 실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국민적 자존심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

명하고 있다. 또 그와 같은 의도는 협정 체결 후 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에 관한 국회토의에서 나온 “정신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족 전체의 염원이요 정부의 소신이었던 것입니다”(국회회의록, 제6대 국회, 제52회, 8월 10일: 4)라고 하는 정일권 국무총리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조항의 규정은 일본의 책임규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단지 민족내부의 자존심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 의도가 무엇이든 일본 측이 그대로 “null and void”의 표현을 허용할 여지는 없었다. 일본 측 공식문서의 비공개로 인해 자료적인 뒷받침은 불가능하나 그 이유는 알기 쉽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성립시점으로부터 무효임을 뜻하는 “null and void”의 사용은 가령 그 규정이 과거처리 문제에 관해 일본 측 실리의 손실에 연결되지 않아도 적어도 그 해석 상 합방 조약은 합법적이었다고 하는 일본 측 입장을 어렵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제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측은 다음 제6차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제2차 안 “Draft Treaty of Amity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2~4.2』: 609)에서<sup>9</sup> 그 전문에 관련 규정을 삽입했으나 그 내용은 구조약들은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do not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 제3차 안인 “Draft Treaty establishing the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에서도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유하지 않는다(are in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sup>10</sup>고 하는 등

9. 다만 동 문서에는 초안 자체는 수록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다음 문헌 참고(外務部政務局, 1960: 287).

10. 이 제3차 초안이 언제 제출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2~4. 2』에서는 동 일본어 초안은 제8차 위원회의 기록 뒤에 소장돼 있으나 내용면에서 판단하면 제7차 위원회 시점에서 이미 동 안은 나와 있었다고 판단된다. 영어 초안은 다음 문헌

구조약들이 당초는 유효였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고집했다.

결국 제1차 한일회담에서 기본관계에 관한 분과위원회는 위 구조약 무효 조항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제8차 분과위원회로 끝났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2~4. 2』: 619) 그것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 대립으로 인해 전체 회담 자체가 결렬됨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 기본관계 문제를 다룰 분과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조차 부정했던 한국 측 자세와 달리 기본관계 교섭은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일단 본격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 후 동 조항의 논란의 핵심이 된 “already” 문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며 또 훗날 기본관계조약의 핵심적인 교섭과제가 된 동 3조 유일합법성 조항 역시 일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기본관계 교섭의 후퇴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일부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은 이외 전 문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1195)는 평가가 나온 기본관계 문제는 제2차 한일회담 이후 급속히 후퇴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기본관계 문제의 대립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구권 문제의 대립에 있었다.

제1차 한일회담에서 정식하게 등장한 소위 재한일본인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으로 인해 ‘선 해결 후 국교’를 기본적인 교섭 전략으로 하던 한국 측은 기본관계 문제의 진전을 서둘러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말할 나위도 없으나 ‘선 해결’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청구권 문제의 ‘선 해결’ 자체가 어려워진 이상 ‘후 국교’에 해당하는 기본관계조약의 교섭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하에서 짚어볼 기본관계 교섭의 후퇴, 소멸 그리고 재등장이라는 과정은 한국

---

참고(外務部政務局, 1960: 291).

측 ‘선 해결 후 국교’라는 교섭 전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된 논리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 귀결은 결국 한국 측으로 하여금 ‘선 해결 후 국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한 그 당시의 제약조건들이 가져다준 것이었다.

1953년 4월 재개된 제2차 한일회담에서는 일단 그 본회의에서 제1차 회담 시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본회의회의록, 1953. 4. 15~30』: 872) 기본관계 문제 역시 토의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논의에 새로운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증거의 하나로서는 한국 측 공식문서에서는 제2차 한일회담 당시의 기본관계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 또 그나마 그 토의의 요지를 담은 『韓日會談略記』는 5월 15일 제1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는 대표의 인사교 환만, 이어 25일 열린 제2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도 조약의 성격, 다른 분과위원회의 결론 삽입, 재일한국인의 국적 확인문제 등에 관해 1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토의만 진행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외무부 정무국, 1960: 104-105). 결국 제2차 한일회담 기간 중 기본관계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확인에 관해서 한국 측 으로부터 그 요구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흔적은 있으나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일본 측 외무성은 이런 기본관계 경시의 이유를 “특히 짚어볼 것도 없으므로 다른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재개한다는 합의로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外務省, 1953: 22)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선 해결 후 국교’라는 한국 측 자세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기본관계 문제는 제3차 한일회담에서 한층 더 그 성격이 애매해졌다. 1953년 10월 6일 재개된 제3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 기본관계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설치가 또 다시 합의됨에 따라 토의가 진행된 사실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에 관한 공식회의록 역시 없다. 더구나 위 『韓日會談略記』가 전하는 토의 내용은 재일한국인 중의 범죄인 인도, 그 해당자의 취급 방법, 그리고 기본관계조약의 삽입조항의 최소화 여부 등이며(외무부 정무국, 1960: 171-174) 동 문제의 핵심이던 구조약 무효문제가 도모에 오른 일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원인의 하나가 주지의 소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제3차 한일회담 자체가 2주 남짓한 짧은 기간으로 결렬된 곳에 있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제2차 한일회담 시와 마찬가지로 청구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동 회담이 그 후 계속되었어도 기본관계 문제가 급진전될 일은 논리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었다고 말해서 무방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하 살피듯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 전망이 아직 서지 않았던 제4차 한일회담 이후에는 그 위원회 토의 자체가 사라진 데 반해 제6차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의 틀이 결정되자마자 그 문제가 재등장한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 (3) 기본관계 교섭의 소멸

따라서 기본관계위원회는 제3차 한일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조약 무효문제는 오히려 제3차 한일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활발해져야 마땅했다. 왜냐하면 제3차 한일회담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미화했다고 하는 소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결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일회담의 재개 조건에 ‘구보타 발언’의 철회가 요구되게 됨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한 동 발언이 합방조약의 합법성의 의미를 내포한 것인 이상 ‘구보타 발언’의 철회요구는 원래 구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임을 확정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보인 중단 기 교섭의 자세는 그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중단 기의 회담 재개 교섭은 1956년 여름쯤의 일본 측 ‘역청구권’ 포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sup>11</sup> 1957년 3월 시점에서 일본 측은 재개합의를 위한 첫 번째 초고를 한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2 1957)』: 1739-1748). 몇 가지 있는 합의문서들 가운데 재개 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정한 합의각서(agreed minutes) 속에서 일본 측은 그 제3항 1) a)로서 ‘구조약들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Matters concerning the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the treaties and

11. 재개교섭의 전개에 관해서는 이미 자세히 논했다(張博珍, 2007: 제4장 제6절).

agreements concluded in and before 1910 are null and void.)를 재개회담에서의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2</sup>(『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2 1957)』: 1743). 즉 구조약 무효조항의 의제 채택 자체에 관해서는 일본 측은 합의각서의 첫 번째 초고 단계에서 이미 수락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 예비교섭을 앞두고 6월 5일 한국정부가 주일대표부에 지령한 훈령에서 정식회담(formal conference) 재개 전에 한국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기본관계 문제에 관해 지적한 것은 구조약 무효 확인 문제를 정식회담의 의제로서 포함할 것뿐이었다(『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2 1957)』: 1750). 즉 한국 측 방침은 위 3월의 일본 측 제안과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6월 14일, 15일의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된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서는 동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립도 없이 재개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의 합의각서 제3항 1) a)로서 3월 18일 일본 측 초안이 그대로 규정되었다(『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2 1957)』: 1791). 그 후 동 실무자 합의는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 측 추가수정 요구로 인해 또 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결국 정식합의는 195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나 구조약 무효 확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3 1958. 1~4)』: 1979).

즉 표면상의 ‘구보타 발언’ 철회요구의 관철과 달리 중단 기 교섭에서 보인 한국 측 자세는 구조약 무효확인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의제 채택만의 요구를 한 것뿐이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회담재개를 위한 ‘구보타 발언’의 철회요구는 결코 구조약들의 원천 무효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것은 한국 측이 재개 회담 이후도 구조약의 원천 무효 확인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채 다른 문제들의 토의에 들어가려고 했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 측은 ‘구보타 발언’이 터짐에 따라 한일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도 합방조약의 유효성 여부

12. 기본관계에 관한 또 하나의 의제는 주권 존중과 비간섭에 관한 것이었다.



를 그대로 남긴 채 단지 제1차 한일회담 이후의 ‘선 해결 후 국교’ 전략에 되돌아갈 것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또 이런 한국 측 제세는 회담 재개 합의 이후 각국 공관장(公館長)에 보낸 설명문서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보인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동 문서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구조약의 합법성(legality)을 포기하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했으나 그 이유는 일본 측의 동 수락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심(suspicion)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었다(『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3 1958. 1~4)』: 1992). 즉 구조약 무효조항의 삽입요구는 장래의 의심을 제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헌법적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기본관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자세는 동 문제를 일단 의제로 삼기로 합의된 제4차 한일회담 이후의 움직임에 상징화 되었다.

1958년 4월 15일 재개된 제4차 한일회담에서는 5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또 장면 정권 출범 후의 1960년 10월에 재개된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11월 2일의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기본관계위원회의 설치가 일단 형식적으로는 합의되었다.<sup>13</sup> 그러나 합의된 기본관계위원회가 실제 가동한 일은 없었다. 그 이유는 제4차 한일회담 시 한국 측 수석대표이자 기본관계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도 맡은 김유택에 의하면 “여타 위원회가 담보상태에 있었기 때문”(한국일보사, 1981: 172-173)이었으며 또 제5차 한일회담 시 개최되지 않았던 것 역시 일본 측 사와다(澤田)대표의 말을 빌리면 “다른 위원회의 과제로 돼 있는 현안들이 모두 타결에 이를 때 처음으로 기본관계 문제에 착수한다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澤田廉三, 1961: 2).

또 한국 측은 제5차 한일회담 개최 후 기본관계위원회의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第五次 韓日會談 豫備會談 會議錄(本會議, 首席代表間 非公式會議, 在日韓人法的地位委員會, 漁業 및 平和線委員會)』: 16) 심지어는 회담을 위한 본국정부의 기본방침에도 기본관계에 관한 훈령은 다른

13. 제4차 한일회담에서의 합의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제1~15차, 1958. 4. 15~60. 4. 15』: 1641). 또 제5차 한일회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第五次 韓日會談 豫備會談 會議錄(本會議, 首席代表間 非公式會議, 在日韓人法的地位委員會, 漁業 및 平和線委員會)』: 14-16).

문제들과 대조적으로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제5차 한일회담 예비 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보고, 1960. 10~61. 5』: 2027~2029).

5.16 쿠데타 후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회담에서는 드디어 기본관계위원회 자체의 설치가 중단되었다. 이것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한국정부 역시 기본관계위원회에 관해서는 회담 진전에 따라 양측 합의에 기초해서 따로 설치하도록 9월 18일자로 훈령을 내리고 있다(『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 2권(V.2 9~10월)』: 204).

이후 기본관계 문제가 정부문서의 표면에 나오게 된 일은 없다. 그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게 된 것은 다음 항에서 밝히듯이 62년 11월의 소위 ‘김-오히라 합의’로 인해 청구권 문제 해결의 틀이 마련된 후인 62년 12월의 본회의에서의 일이었다. 즉 그간 이승만, 장면, 박정희라는 극적인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구조약 무효조항의 문제는 청구권문제의 뒤에 숨어, 일관되게 소멸 과정을 걸었던 것이었다.

## 2. 기본관계 교섭의 재등장과 해결과정

### (1) 유일합법성 문제의 맹아(萌芽)

주지의 김-오히라 합의로 인해 청구권 교섭의 틀이 결정된 후에 소멸되던 기본관계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오른 것은 동 교섭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너무나 상징적이었다. 즉 ‘선 해결’의 문제의 관건이던 청구권 문제에 그 해결의 전망이 서자 한국 측은 그 실현을 위해서 교섭의 마무리를 의미한 ‘후 국교’ 부분의 해결을 서둘러야 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동 문제의 재등장이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12월 21일 열린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전체회의 제20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sup>14</sup> 단독으로 기본관계조약 교섭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 측은 동 회의에서 제출한 기본관계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았다.

&lt;표 1&gt; 62년 12월 21일 한국 측이 제출한 기본관계 원칙

1. 형식	조약
2. 영토 조항	영토조항에 관해서 양국 입장의 조정을 위하여 “현재 행정적 지배 하에 있는 지역 및 앞으로 행정적 지배에 들어올 지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3. 구조약 무효 문제	1910년 이전의 구 한국정부와 일본제국 정부간의 모든 조약, 협정의 무효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타	대일평화조약 제4조(c)항에 따라서 해저전선의 귀속을 규정해야 한다.
	청구권, 어업, 법적 지위에 관한 해결원칙은 규정해야 한다.

자료: 다음 문서에 수록된 “1962. 12. 21(제20차 예비교섭) 아측이 제시한 기본관계에 관한 입장”에서 저자가 정리했음(『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 5권(V.1 교섭 및 서명)』: 6).

위 방침 속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시점에서 최종조항으로서 제3조가 된 유일합법성 조항으로 이어질 방침이 처음으로 일본 측에게 공식화된 점이다. 그러나 동 문제는 맨 처음에는 영토조항이라는 개념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 기록상 유일합법성 조항으로 귀결된 인식이 한국 측 내부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제6차 한일회담 개최를 앞두고 1961년 9월 11일자로 작성된 내부분서 “한일 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최종 양보선”(『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 2권(V.2 9~10월)』: 157-174)에서의 일이다. 동 문서 속에서는 기본관계 문제에 관해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라는 전제 위에 건전하고 선린(善隣)적 관계를 설정”(『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 2권(V.2 9~10월)』: 172)한다는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즉 당초 내부적으로는 훗날 기본관계조약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이 될 인식이 직접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문제가 왜 영토조항이라는 요구로서 일본 측에

14. 일본 측은 김-오히라 합의 직후의 제15차 절충회의에서 기본관계 문제는 최종단계에서 다루면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한국 측이 동 문제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후인 26일의 제21차 회의에서도 기본관계 문제는 각 현안들의 해결 후 다룰 것으로 합의돼 있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제15차 회의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第六次韓日會談 會議錄(Ⅲ) 第二次 政治會談 豫備折衝(1962. 8. 22~1962. 12. 25)』: 257). 또 제21차 회의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第六次韓日會談 會議錄(Ⅳ) 第二次 政治會談 豫備折衝(1962. 12~1963. 5)』: 40).

제기되었는지 공식문서에서는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라는 엄연한 조건 하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 전망이 섬에 따라 그 협정의 지리적인 효력을 규정하는 과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은 십사리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협정의 지리적 효력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합법성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직접 지리적인 개념을 채용하는 것이 한국 측 입장에서는 바람직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 기술한 동 영토조항의 표현은 원래 동 협정의 효력을 ‘전 한반도’라고 표기함으로써 앞으로의 북일 간 교섭을 차단하고 싶었던 한국 측 입장<sup>15</sup>과 동 협정의 효력을 남측에 한정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국내에서 일어날 것이 예상될 비판의 완화와 앞으로의 북측과의 교섭여지를 남기고 싶었던 일본 측 입장과 절충안이었다고 풀이 된다. 그것은 동 방침 속에 있는 “양국 입장의 조정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북측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뻔한 ‘앞으로 행정적 지배에 들어올 지역’이라는 규정을 일본 측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동 문제가 그 후 유일합법성 조항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된 이유는 결국 위 대립이 가져다준 부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김-오히라 합의’ 이후 급격히 전전되듯이 보인 기본관계 교섭은 결국 1963년의 한국 국내에서의 민정이양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소위 ‘6.3 사태’로 불리는 1964년 전반기의 거센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부딪히자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실제 위 1962년 12월의 한국 측 기본관계 원칙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본관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64년 5월의 일이었다. 또 개최된 동 위원회 역시 거센 한일회담 반대의 흐름 속에서 결국 두 차례만 열린 것뿐이며 그 내용도 이미 교환된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진전밖에 없었다.(『속개 제6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1964』: 18-22 및 29-33)

15. 청구권협정 제2조 조문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한국 측 목적이 앞으로의 북일 간 교섭의 가능성 차단에 있었던 점에 관해서는 이미 자세히 논했다(張博珍, 2007: 391-396).

그런 가운데 한국 측 내부에서는 주목될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1964년 5월 25일 한국 측이 작성한 기본관계조약의 지침에 나타난 변화였으나 그 내용은 이미 대두되던 영토조항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었다(『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 5권(V.1 교섭 및 서명)』: 17).<sup>16</sup>

즉 1962년 12월 시점에서 부각된 영토조항은 일단 그 삭제가 검토된 것이었다. 다만 그 이유 역시 자료적으로는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토조항이 일본 측에 제시된 지 이미 1년 반쯤 경과된 시점에서 한일협정의 효력이 전 한반도에 미친다는 한국 측 주장에서는 일본 측과의 타협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인식되어 있었을 것이다. 영토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일본 측이 남측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는 구절을 요구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으며 사실 제7차 한일회담에서도 그 요구는 나왔다. 그러나 그런 협정의 효력을 남측에만 한정하는 듯한 규정을 허용하지 못하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회담 자체의 조기타결을 생각하면 남은 선택은 영토조항 자체의 규정을 오히려 일절 삭제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후 제7차 한일회담에서의 핵심문제로서 대두된 유일합법성 조항은 결국 영토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생길 공백, 즉 앞으로의 북일 간의 교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체방법이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동 5월 25일 지침에서는 한국정부는 구조약 무효 확인 조항에 관해서 본문 제2조의 규정으로서 무효 시점을 ‘당초부터(ab initio)’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 규정의 삽입을 철회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 5권(V.1 교섭 및 서명)』: 14). 그러나 동 지시는 비록 ‘당초부터’의 규정을 절대 조건으로 삼지 않았으나 “null and void” 자체가 ‘당초부터’의 의미를 가지는 이상 제1차 한일회담 당시부터의 한국 측 방침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16. 동 문서의 날짜는 동 지침과 같이 첨부되었다고 추측되는 ‘시안’에 쓰인 5월 25일에 따른 것이므로 저자의 추측이다. 동 ‘시안’은 다음 문헌에 수록(『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 5권(V.1 교섭 및 서명)』: 18-24).

## (2) 제2조 및 제3조의 조문 교섭

14년에 걸쳐서 진행된 한일회담에 마무리를 지은 제7차 한일회담은 196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기본관계위원회는 8일부터 개시되었으나 한국 정부가 그 회의를 앞두고 11월 30일자로 준비한 기본관계조약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방침은 이하와 같은 것이었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7-9).<sup>17</sup>

제2조: 구조약 무효의 규정에 관해서 시점을 “당초부터(ab initio)”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

제3조: 대한민국정부만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은 어떠한 경우도 유지. 따라서 “2개의 한국” 또는 “이북에 별도의 권위”가 있다는 개념이 절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5월의 지침에서 일단 삭제된 영토조항이 유일합법성 조항이라는 형식으로 처음으로 공식 탈바꿈한 것이었다.

12월 10일의 제2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는 양국은 상호에 조약 초안을 제출, 교섭은 본격적으로 조문작성 교섭의 단계에 들어갔다. 동 위원회에서는 한국 측은 “기본관계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요강안”, 일본 측은 “일한기본관계에 관한 합의 요강안”을 각각 제출했다. 동 두 안 속에서 구조약 무효조항 관련과 유일합법성 조항 관련을 발췌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된다.

<표 2>에 제시된 안들 속에서는 한국 측이 유일합법성 조항을 본문이 아니라 당초 전문에서 규정하려고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측은 본문에서 한국정부의 관할권이 남측에 한정됨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 것, 그리고 한국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엔결의 195(III)을 명기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한 유엔결의 195(III)이라 함은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한국정부의 합법성에 관한 유엔결의를 뜻하나 동 선언의 내용은 한국이 남쪽에서 진행된 선거를 거쳤다는 의미에서 합법적이며 따라서 그 지역에 관해 시정

17. 문서에서는 제3조에 관해서는 ‘일반방침’, 그리고 제2조에 관해서는 ‘세부방침’ 속에서 각각 지정돼 있다.

&lt;표 2&gt; 12월 10일에 한일 양국이 제출한 기본관계에 관한 요강안

	“기본관계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요강안”	“일한기본관계에 관한 합의 요강안”
전문	대한민국이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	-
본문	구조약.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	1) 대일평화조약 제2조(a)의 규정 및 UN 결의 195(III)의 취지 확인 2) 본 선언 및 위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 및 관할권은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북측 부분에 못 미치고 있음을 고려됨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했음(『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31 및 35-36).

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었다.<sup>18</sup> 따라서 동 유엔결의의 명시는 본문 2)의 노골적인 표현과 아울러 한국의 시정권이 남쪽에만 한정됨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 측이 수락하기 어려운 요구를 일본 측이 왜 들고 나왔는지에 관한 자료적인 규명은 일본 측 공식 문서의 공개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듯이 결과적으로 동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려 하지 않았던 일본 측 자세를 보면 동 요구는 한국 측과의 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교섭 재료로 삼으려고 한 전략이었던 가능성이 크다.

한국 측에게는 “관할권 문제는 이 때문에 국교정상화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57)는 문제인 만큼 동 요구는 일본 측에게 유효한 교섭재료가 될 수 있었다.

기타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유일합법성 조항의 전문 규정의 요구에 대해서도 유엔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구실로 난색을 표시했다(『제7차 한일회담

18.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외무부, 1958: 5).

<표 3> 65년 1월 25일 한국 측 훈령, 최종안 및 설명

	구조약 무효 조항	유일합법성 조항
훈령	구조약 무효에 관해서 “당초부터”라는 어구는 반드시 규정되지 않아도 가하나 내용으로서 이를 견지하고 무효라는 확인조항 (예컨대 “...are null and void”)을 두도록 한다.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과 대일평화조약 제2조(a) 및 유엔결의 195(III)의 취지 확인에 관해서 이하 단계에 따라 교섭한다. 가. 유일한 합법정부 취지 확인조항을 삽입한다. 단 유엔결의 195(III)과 평화조약 제2조(a)는 언급하지 않는다. 나. 유엔결의 195(III)만 언급하되 그 결의인의 전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 표현(예: 유엔결의 195(III)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등) 다. 평화조약 제2조(a)를 부득이 인용해야 할 경우에는 동 규정만을 특별히 인용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지 않는 표현(예: 한국에 관련된 평화조약 각 조항을 유념하고...)을 사용 한국정부의 관할권 문제: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제한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규정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도록 한다.
최종안	본문 제3조 “It is recogniz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null and void”	본문 제2조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recognized under Resolution 195 (III) of December 12, 1948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up>19</sup>
설명	아측은 최종입장으로서 “당초부터”라는 표현은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효조항은 반드시 두되 무효는 “... are null and void”라고 표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 측으로서 유엔결의 195(III)이나 기타를 인용함이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둬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나 일 측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또한 일 측으로서 유엔결의 195(III)을 한국정부의 관할권에 제약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서 인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측은 최종입장으로서 유엔결의 195(III)을 인용하되 전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안)과 같은 표현을 본문에 삽입코자 하는 것이며 교섭에 따라 전문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다음 문서에서 저자가 정리했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89-92(훈령), 79-82(정부 최종안), 83-87(설명)). 인용 중 평화조약 제2조에 관한 표기는 동 문서에서는 “a”가 빠지고 있으나 내용상 제2조 (a)임은 분명하므로 저자가 보충했다.

19. 다만 동 안에서는 전문에 동 조항을 둘 것도 고려되어 있었으며 그 때의 표현은 다음 이었다. “Confirm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recognized under Resolution 195(III) of December 12, 1948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42). 또한 본문 구조약 무효규정 요구에 대해서도 “조약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체결된 사실 자체가 문제”(『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43)가 된다고 말해서 거절 의사를 천명했다.

1965년 1월 25일 한국정부는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 및 최종안, 그리고 그 설명까지 포함한 상세한 지령을 보냈다. 그런 지령 속에서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된다.

다만 한국정부는 <표 3>에서 제시한 최종안을 당장 제시할 것이 아니라 동 훈령에 따라 주일대표부가 작성한 중간 교섭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88) 동 훈령 후 열린 26일의 제7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실제 제시한 구체적인 안은 다른 것이었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식기록에서는 그 안은 찾을 수가 없으므로 제7차 기본관계 위원회에서 양측이 다시 제시한 안을 회의록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추측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은 구조약 무효조항의 삽입 자체는 사실상 수락했다. 또 관할권을 명시하는 조항 자체의 삭제에도 합의했다. 물론 이것은 한일협정의 효력이 전 한반도에 미칠 것에 대한 승인을 뜻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 측 요구인 유일합법성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거절한 일본 측 태도가 입증하고 있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93-101). 이후의 교섭의 흐름을 생각할 때 일본 측이 노린 것은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할 영토조항에는 타협자세를 보이면서 구조약 무효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유일합법성 조항을 활용할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한 일본 측 거절을 맞아 2월 1일 한국 측은 앞선 1월 26일의 위원회에서 제시하던 문안의 뒤에 “as declar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을 부기한 새 안을 제시하여(『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123) 표면적인

&lt;표 4&gt; 65년 1월 26일 한일양국이 제안한 내용

	한국 측	일본 측
구조약 무효 확인 조항	그대로 최종안인 “...are null and void”가 제시된 가능성이 높음 <sup>20</sup>	전문에서 규정함을 고려할 수 있다고 표명
유일 합법성 확인조항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sup>21</sup>	전문에서: “국제연합총회가 1948년 12월 12일에 조선의 독립 문제에 관하여 결의 195(III)을 채택한 것을 상기하여...”를 규정

자료: 다음 문서에 수록된 제7차 위원회, 제8차 위원회의 회의록과 일본 측 제출안에서 저자가 정리했음(『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93-120(회의록) 및 126-131(일본 측 제출안)).

타협을 도모했다. 그 새 안은 이하와 같았다.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declar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하선은 인용자)

위 수정의 한국 측 의도는 분명하다. 그것은 유엔결의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싶은 일본 측 안을 받아들일 형태를 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195(III)’의 명시는 피함으로써 한국정부의 관할권이 남측에만 제한된다는 의미를 없애는 한편 마치 유엔결의가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선언한 듯이 꾸민 것이었다.

2월 3일 시이나(椎名) 외무대신의 17일부터의 방한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흐름을 타서 2월 5일 제9차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은 구조약 무효조항의 규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본문 제5조로서 처음으로 “...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에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have no effect as between Japan

20. 동 위원회에서의 조문 설명 중 “당초부터(ab initio) 무효라는 입장에서 ‘are null and void’라 하였다”는 발언이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98).

21. 이 안은 공식기록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 한다. 그러나 이하 기술하듯이 2월 1일의 한국 측 수정안이 26일의 수석 어구를 붙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던 한국 측 안에 대해 일본 측이 “only lawful Government 만으로는 절대 안 되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114)고 거절한 것에 대한 수정이 니만큼 1월 26일 제7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출하던 동 안은 이 표현이었다고 판단해서 무방하다.

and the Republic of Korea)는 문안을 제안했다<sup>22</sup>(『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135). 한편 2월 8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한국 측도 주목될 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해서는 본문 제2조를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하는 것이었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156).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declared in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하선은 인용자)

위의 한국 측 수정의 의도 역시 알기 쉽다. 그것은 “as declared in the resolution 195(III)”이라고 유엔결의 195(III)를 표기함으로써 일본 측 요구에 한 층 더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마치 동 유엔결의가 대한민국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성을 선언한 바와 같이 조문을 차린 것이었다. 즉 위 2월 1일의 제안이나 2월 8일의 새 문안에 보이듯이 한국 측은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해 일본 측과의 타협을 모색하면서도 최대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었다.

한편 구조약 무효조항에 관해서는 본문 제3조로서 계속 그대로 “... are null and void”라는 표현만을 유지했다. 동 표현은 이하 보듯이 결국 시이나 방한 시의 막판 교섭까지 유지되었으나 이것은 결코 구조약의 원천 무효 확인을 일본 측에 요구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한국 측은 동 위원회에서 “null and void” 표현에 관해 “현재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불법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null and void”라는 표현이라도 일본 측의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남기고 있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173). 즉 막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제기된 “null and void” 표현의 규정요구는 이후 곧 문제가 될 “already”의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구조약 무효조항’을 두지 않고 “한국 측은 처음부터 무효라 설명하고 일본 측은 현

22. 다만 영어 표기의 제출은 2월 8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재 무효라 설명할 수 있도록”(『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174)하려고 한 제1차 한일회담 당시의 일본 측의 도와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것이었다.

코앞에 다가온 시이나 방한 전의 타결을 목적으로 2월 10일 제11차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다시 주목할 만한 수정안을 내놓았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202).

제5조: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declared in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하선은 인용자)

제6조: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have no effect become null and void.”(하선은 인용자)

즉 일본 측은 제5조 유일합법성 조항을 “a lawful government”로 함으로써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합법정부임을 부각시켰다. 또 제6조 구조약 무효조항에 관해서도 “null and void”는 채용했으나 한국 측의 원천 무효라는 해석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서 현재 무효가 되었음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17일로부터의 시이나 외상 방한을 앞두고 일본 측 역시 한국 측과의 접근을 위해 12일 열린 제5차 수석대표간담회에서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해서 ‘하나’를 강조하는 “a”의 표현을 바꾸어 이하와 같이 일단 ‘유일합법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락했다(『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1964~65』: 271).

- “...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within the meaning (or sense) of the Resolution 195(III) ...”

-“... is (the) such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declared in the Resolution 195(III) ...”

그러나 물론 동 수락은 위의 안들이 가리키듯이 한국정부의 유일한 합법

성이 유엔결의안이 뜻한 범위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5일의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최종 배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225-226). 최종의 정식조약 제3조가 된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해 일본 측은 동 위원회에서 최종안임을 강조하면서 이하와 같은 새 수정안을 또 다시 제시하고 있다<sup>23</sup>(『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221-222).

- “... the only such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is specified (described or declared) ...”(하선은 인용자)

12일의 안을 거쳐 15일 안에서 정식 들어가게 된 동 “such”의 존재야말로 실은 막판 교섭에서 일본 측이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흥정 재료였다고 보여 진다.

### (3) 제2조와 제3조의 흥정

결국 시이나 방한까지 구조약 무효조항과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한 문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시이나 방한 전의 16일자로 작성된 양국 초안에서 확인되는 동 조항에 관한 대립점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된다.<sup>24</sup>

시이나 방한 시의 막판 교섭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동 2조와 3조가 각각 개별적으로 교섭, 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두 조항이 일본 측의 전략에 의해 서로 흥정관계가 됨으로써 그 타결을 보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이다.

2월 17일부터 예정대로 시이나 외상의 방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8일,

23. 동 문안 자체는 회의록에 없으므로 동 위원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인용자가 추측, 작성했다.

24. 한국 측 안은 다음 문헌 참고(『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 5권(V.1 교섭 및 서명)』: 101-104). 또 일본 측 안은 다음 문헌 참고(동 문서: 105-108). 동 문안에는 손수로 나중에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 전의 교섭 내용을 생각하면 인쇄된 문안이 16일까지의 양국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5〉 시이나 방한 전의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양국 대립점

		한국 측 주장	일본 측 주장
본문	제2조	“are null and void”	“have become null and void”
	제3조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declared in ...”	“...the only such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is specified in ...”

자료: 저자가 본문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정리했음.

19일 두 번에 걸친 공식 외상회담에서는 동 쟁점에 관한 직접 교섭이 이루어진 흔적은 없다.<sup>25</sup> 18일 제1차 외상회담에서는 우선 남은 기본관계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자 협의에 맡기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외상회담은 중단, 동일 외무부에서 기본관계 문제 실무자 토의가 개최되었다(『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 방한, 1965. 2. 17~20』: 352-353). 그 토의 가운데 일본 측은 구조약 무효조항에 관해 이하의 〈표 6〉에 표시했듯이 새로운 3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종문안에는 동 3안 중 다)가 채용되었다. 즉 동 조항에 관해 그 핵심적인 논란 대상으로 되어 온 “already”의 삽입은 김동조의 증언<sup>26</sup>과 달리 일본 측 안이었다. 또 유일합법성 확인 조항에 관해서도 양국은 동 회의에서 다음 〈표 7〉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표 7〉에 제시된 제안들을 보면 막판교섭에서의 대립은 유엔결의가 지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동사표현에 있듯이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기본적인 대

〈표 6〉 1965년 2월 18일 일본 측이 제출한 구조약 무효조항에 관한 3안

- |  |
|--|
| 가) “... are confirmed (as) null and void now”        |
| 나) “... have been invalidated and are null and void” |
| 다) “... are already null and void”                   |

자료: 다음 문서에서 인용(『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295).

25. 제1차 외상 회담의 토의 기록은 다음 문헌 참고. (『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 방한, 1965.2.17-20』:347~353) 또 제2차 회담의 토의 기록은 다음 문헌 참고. (동 문서:354-357)

26. 김동조는 “already”의 부가가 한국 측 제안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동조, 1986: 279)

<표 7> 65년 2월 18일 한일 양국이 제출한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한 안

한국 측 주장	일본 측 주장
가 “... as recognized by ...” 나 “... as stipulated by ...” <sup>27</sup>	가 “... as meant in ...” 나 “... as defined by ...” 다 “... as specified by ...”

자료: 다음 문서에서 인용(『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295).

립점은 결국 유엔결의가 한국정부의 합법성을 남측에만 한정하고 있음을 희석시키고 싶은 한국 측과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은 일본 측 입장에 있었으니 만큼 위 동사표현의 선택문제가 대립의 핵심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막판까지 남은 동 문제에 관해 무엇이 대립되고 또 어떻게 타협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이에 관한 공식기록은 없다. 교섭의 주역이던 이동원 장관(이동원, 1997: 90-97)과 시이나 외상(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1982: 61-62)은 서로 일치해서 그 합의가 밤늦게 ‘청운각(淸雲閣)’이라는 요정(料亭)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애당초부터 그에 관한 공식기록은 없다고 봐 무방하다. 그러나 위 문제는 논리적으로 추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하의 <표 8>에 표시한 최종 정문(正文)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표 8>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B조의 최종 정문

2조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u>already null and void</u> .”(하선은 인용자)
3조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u>only lawful</u> Government in Korea as i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하선은 인용자)

27. 다만 2월 15일 시점에서 외무부가 작성한 ‘시이나 방한 시에 있을 회담의 의제 및 아측 입장’에서는 동 조항의 표현에 관해서는 “... as recognized...”, 또는 “... as referred to ...”의 두 가지를 한국 측 입장으로 하고 있다(『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 방한, 1965. 2. 17~20』: 158). 따라서 두 번째 표현인 “... as referred to ...”가 왜 “... as stipulated by ...”로 변했는지는 자료적으로 불투명하다.

〈표 9〉 최종 조문의 변화에 따른 한일 양국의 득실

	한국 측	일본 측
2조: “already”의 삽입	양보	이득
3조: “such”의 삭제	이득	양보

자료: 저자가 본론의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

즉 시이나 방한 전의 15일까지 남았던 대립점, 그리고 18일의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구조약 무효조항의 3 안을 감안할 때 위 최종 정문에서의 변화는 결국 제2조에 관해서는 “already”가 삽입된 반면 제3조에 관해서는 일본 측 요구이던 “the only such lawful”에서 “such”가 삭제된 것이었다. 이 수정의 양국 득실을 먼저 정리하면 이하의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lready”는 말할 나위도 없이 합방조약 등 구조약들의 원천 무효의 해석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그 삽입은 일본 측 이득을 위해 한국 측이 양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 “such”의 삭제는 그것이 한국의 유일 합법성을 유엔결의의 범위 내에 한정하는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인 이상 그 삭제는 한국 측 이득을 위해 일본 측이 양보한 것으로 생각해서 틀림없다.

사실 애매하게나마 이 점은 자료적으로도 추측 가능하다. 김동조(1986: 279)는 시이나 방한 시의 19일 열린 제2차 외상회담에서 시이나 외상이 “막바지에 가서야 관할권조항의 삽입은 철회하겠으니 이제는 한국 측이 양보할 차례”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할권 조항은 공식문서 상 1월 26일 제7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삭제하는 데 이미 합의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위의 발언은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이나 외상이 “이제는 한국 측이 양보할 차례”라고 한 의미는 〈표 9〉의 일본 측 득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3조의 “such”를 삭제하는 대신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에 관해 “already” 삽입에 대한 한국 측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 된다.<sup>28</sup>

한국 측 역시 이 막판 흥정은 사전에 상정하던 범위 내의 선택이었을 가



능성이 크다. 사실 이동원 외무부장은 시이나 외상과의 제2차 교섭이 있었던 2월 19일 저녁 5시쯤 진해에 내려가기 전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구조약에 관한 타협 가능성에는 언급하는 한편 관할권 문제는 국가의 기본인 만큼 타협은 어렵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다(李東元, 1997: 87-88). 또 일본 측 집권여당이던 자민당(自民党) 역시 이런 한국 측 자세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시이나 외상 방한 시 그 교섭 상의 최대의 쟁점은 제3조 한국의 주권 문제였다고 회상하고 있다.(自由民主党, 1985: 95) 즉 한국 측은 시이나 외상 방한 중의 기본조약 가서명 실현이라는 지상명제와 유일합법성 표현의 강화라는 최대의 목표를 위하여 일본 측의 요구였던 구조약 무효문제에 관한 양보를 결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타협은 한일양국이 서로 평등하게 양보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조문에 충실해지기만 하면 곧 알 수가 있다. 제2조는 “already” 삽입에 따라 구조약이 당초 유효였음을 드러내는 조항이 되는 데 반해 제3조는 “as i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라는 문구가 남은 한 “such”의 삭제만으로 한반도 전역에서의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뜻할 수는 없었다. 일본 측은 이것을 충분히 상정하면서 막판 교섭에서 “already”와 “such”의 삽입을 일단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을 위해 한국 측에게 “already”의 삽입을 촉구하는 대신 “such”를 빼는 표면상의 상호 양보의 스타일을 차린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에게 그 “such”의 삭제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은 예컨대 2월 12일의 초안에서 겨우 그 “such”가 등장한 것을 봐도 분명하다. 즉 일본 측 전략은 미리 삭제를 전제로 하던 “such”를 막판에 부각시킴으로써 “already”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풀이 된다.

물론 이런 흥정 결과는 한국 측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시킨 것이었다. 평화

---

28. 비준국회에서 동 기본관계조약 제2조 조문에 관해서 이동원 외무부장은 마지막 교섭의 대립점이 일본 측 “have become null and void”의 봉쇄에 있었듯이 부각시킴으로써 얻어낸 결과에 대해 “깨어지려는 단계를 거쳐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일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국회회의록, 제6대 국회, 제52회, 1965년 8월 8일: 2). 그러나 본론에서의 분석이 밝혔듯이 동 답변은 거짓 답변이며 진상은 일본 측 안을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이었다.

조약 제2조 (a) 등으로 인해 합방조약의 원천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못했던 한일회담에서는 그에 따라 일본이 그 불법성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이상 회담 성사를 지상명제로 하던 한국 측에는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한국 측은 그나마 “such”의 삭제라는 자그마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일본 측이 노린 “already”의 삽입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자료와 조문교섭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공식기록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나 제2조와 제3조가 독립된 조항으로서 각각 개별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흥정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IV. 결론

이상 기본관계조약 중의 핵심인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과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의 교섭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로서 먼저 제시한 본고의 과제에 대해 이하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가)에 관해서

한일회담에서 양국간의 과거처리에 관한 ‘헌법적인’ 성격을 지닌 기본관계 조약 속에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의 교섭 과정은 동 교섭이 과거처리의 원칙 설정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음을 나타냈다. 그 성격은 ‘선 해결 후 국교’라는 당초부터의 한국 측 교섭방식에 무엇보다 잘 나타났다. 왜냐하면 식민지관계에 기인한 구체적인 과거처리 문제를 해결한 후 기본관계의 문제를 교섭할 것을 의미한 동 전략은 과거처리를 위한 ‘헌법’없이 과거를 처리할 것을 뜻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김동조, 정일권의 증언을 통해서 봤듯이 동 조항의 삽입 요구는 단지 ‘자존심’의 문제이지 과거처리를 위한 ‘실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동 교섭은 1962년의 김오히라 합의로 인해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의 틀이 타결된 후에야 처음으

로 본격화되었다.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은 한일회담 마판까지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의 불법성 확정과 그 책임 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처리를 이룩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것이다.

#### 나)에 관해서

제2조의 교섭과정은 동 조항이 무효시점에 관해 애매해진 이유가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 등 개별정권의 속성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것은 박정희 정권 하의 교섭에서 이루어진 “already”의 삽입여부와 상관없이 한일회담의 당초부터 한국 측이 피력하던 생각이었다. 제1차 한일회담에서 “null and void”의 확인만을 규정하려 한 한국 측은 무효시점을 명기하지 않고 동 표현만을 규정하는 이유를 해석의 실행으로부터 생길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무효시점을 애매하게 할 생각은 ‘반일주의자’인 이승만 집권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한국 측이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일중시 정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평화조약에서는 한일합방의 원천 무효라는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동 조약에 법적 기초를 둔 한일회담에서는 원천 무효를 고집한 교섭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여 진다.

즉 선행연구가 짚어봐 온 박정희 정권 하의 “already” 삽입과 상관없이 구조약의 무효시점이 애매하게 된 것은 한일회담이 짚어진 역사적 한계 속에서 당초부터 이미 정해진 결과였던 것이다.

#### 다)에 관해서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은 당초 영토조항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1962년의 감오히라 합의에 따른 청구권 교섭의 타결 전망이 서자마자 나온 것이었다. 그 이유가 청구권 자금 수취를 위하여 동 협정의 지리적인 효력을 확정해야 하는 데에 있었음은 그 등장 과정이 밝히고 있다. 한국 측은 물론 동 효력을 전 한반도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북측과의 교섭여지를 남겨야 했던 일본 측 입장을 생각할 때 지리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영토조항은 위험이 컸다. 그것이 그 후 동 문제가 유일합법성 조항으로

바뀐 이유라고 추측된다. 물론 간접적으로나마 북측에 대한 시정권을 인정하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성 규정을 그대로 일본 측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측이 동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규정한 유엔결의 자체가 남측 지역에서만의 유일합법성을 선언했었다는 사정이 깔려 있었다.

이런 조건 아래 한국 측은 유엔결의가 뜻하는 한국의 주권제한을 해석하기 위한 교섭을 적극 벌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막판 교섭 시 제2조와 비교해 그 조문작성 과정에서 보인 한국 측 노력에도 볼 수 있고 또 이동원 외상의 증언 역시 동 문제가 한국 측의 최대 과제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 측이 유일합법성 조항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었던가는 이하 라)에서 확인할 시이나 외상 방한 시의 제2조와 제3조 교섭에 나타났다. 즉 동 제3조로 인해 한국정부의 주권 영역이 애매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한국정부의 동 문제에 대한 소극성의 결과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나마 제2조를 희생시키는 큰 대가를 치르기까지 해서 획득한 적극적인 ‘성과’였던 것이다.

#### 라)에 관해서

여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기본관계조약의 핵심이던 제2조와 제3조는 서로 독립된 조항인 양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시이나 방한 시의 막판 교섭과정은 동 조항의 결과가 단지 개별적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라 흥정 결과로서 정해졌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즉 합방조약의 유효성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는 “already”의 삽입과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에 제한이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는 “such”의 삭제가 흥정대상으로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관계의 처리라는 ‘과거’ 문제가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대표성과 북일 간의 교섭차단이라는 ‘미래’를 위해 사라져야만 했던 한일회담의 성격을 상징한 것이었다.

이 의미에서 한일회담의 성격은 본고 벽두 한국정부의 설명으로서 인용한 “양국간의 과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장래 관계를 여하히 설정할 것인가”를 위한 교섭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하겠다. 한일회담은 미래를 위

해 이미 구조적으로도 실현시키기 어려웠던 식민지관계 처리의 기회를 정식으로 역사 속에 묻어버리기 위한 절차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한일회담 공식문서>

-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
-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회의회의록, 제1차~10차, 1951』.
-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본회의회의록, 제1차~5차』.
-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 2. 22~4. 2』.
-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본회의회의록, 1953. 4. 15~30』.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2 1957)』.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3 1958. 1~4)』.
-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제1~15차, 1958. 4. 15~60. 4. 15』.
- 『第五次韓日會談 豫備會談 會議錄(本會議, 首席代表間 非公式會議, 在日韓人法地位委員會, 漁業 및 平和線委員會)』.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보고, 1960. 10~61. 5』.
-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2 9~10월)』.
- 『第六次韓日會談 會議錄(III) 第二次 政治會談 豫備折衝(1962. 8. 22~1962. 12. 25)』.
- 『第六次韓日會談 會議錄(IV) 第二次 政治會談 豫備折衝(1962. 12~1963. 5)』.
- 『속개 제6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1964』.
-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1964~65』.
-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 12~65. 2』.
-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 1964~65, 전 5권(V.1 교섭 및 서명)』.
- 『시이나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 방한, 1965. 2. 17~20』.
- 外務部 政務局. 1960. 『韓日會談略記』.
- 외무부. 1958. 『한일관계참고문서집』.
- 대한민국정부. 196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 <기타>

- 국회의회의록. 1965. 제6대국회 제52회 “제7차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8월 8일. 제7호.
- 국회의회의록. 1965. 제6대국회 제52회 “제9차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8월 10일. 제9호.
- 김동조. 1986. 『회상 30년 한일회담』. 서울: 中央日報社.

- 김용식. 1993. 『새벽의 약속』. 서울: 김영사.
- 梁好民. 1965. 「基本關係條約 - 그 政治的 盲點을 批判한다 -」. 『思想界』 7월호 緊急增刊號. pp. 47-51.
- 俞鎮午. 1961. 「韓日會談을 回顧하며」. 『時事』 11월호. pp. 6-9.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장희. 1996. 「1965년 韓日基本條約의 제검토」. 이장희 편. 『韓日基本條約의 再檢討와 東北亞秩序』. 서울: 아사연. pp. 1-16.
- 張博珍. 2007. 「韓日會談에서의 植民地關係 清算研究 - 清算消滅의 政治論理를 中心으로 -」. 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한국일보사. 1981. 『財界回顧10 歷代金融機關長篇Ⅱ』. 서울: 한국일보사출판국.
- 한상범. 1995. 「한일기본조약」.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서울: 아세아문화사. pp. 139-159.
- 李東元. 1997. 『韓日條約締結秘話-ある二人の外交官の運命的出会い』. 崔雲祥監訳. 東京: PHP研究所.
- 太田修. 2003.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東京: クレイン.
- 外務省. 1953. 「日韓關係に横たわるもの」. 『世界週報』 第34卷 第32号. pp. 16-26.
- 澤田廉三. 1961. 「日韓国交早期樹立を望む」. 『親和』 第94号 8月. pp. 1-3.
-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会. 1982. 『記録 椎名悦三郎(下卷)』. 東京: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会.
- 自由民主党. 1985. 「自民党 30年の検証 日韓国交正常化」. 『自由民主』 2月. pp. 88-99.
- 高崎宗司. 1996. 『検証 日韓會談』. 東京: 岩波書店. 1996年.
- 吉澤文寿. 2005. 『日韓關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一』. 東京: クレイン.

##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Focusing on Article 2 and Article 3

Chang Bak-Jin

Part-time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problems, especially on Article 2 and Article 3, which can only be discussed by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mainstream in the study on Article 2 and 3 of the Treaty has been 'Non-Process Analysis,' which can only explain the meanings of the final text. As a result, the two articles have been understood logically resulting from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contrast, this paper, by using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ich the Korean Government made public in 2005, focuses on the formation processes and discusses the following four problems which have not yet been precisely understood under the 'Non-Process Analysis.'

The first is about the meaning of Article 2, and the second is whether Article 2, which has been accepted to mean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were at first effective, was linked to the character of an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pro-Japanese one of Park Chung-hee. The third, can Article 3 simply be regarded as the consequence of the compromis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finally, what was the relationships between Article 2 and 3 in the negotiation processes?

This study will conclude the first question with an answer that Article 2 has no relation to the principle on which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carried out, and the second question with that Article 2 has not resulted from the pro-Japanese characteristic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rticle 2, which permitted Japan to interpret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on or before August 22, 1910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t first effective, had already been in existence during the negotiations o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Furthermore, in answering the third question, it will be elucidated that Article 3 was a fruitful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obtained by doing her best in the negotiations under the given conditions. Lastly, the final question, that the two Articles we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that is to say, Article 3 was a gain at the expense of Article 2 to the Korean side.

Key Words: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ticle 2, Article 3, the process analysis

